



한국학술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2006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 신청요강

2006. 9.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내용	1
1. 지원분야 및 대상	1
2. 지원예산	2
3. 지원규모 및 기간	2
III. 신청	2
1. 신청자격	2
2. 신청기간	3
3. 신청방법	3
4. 온라인 신청절차	3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5
IV. 심사 및 선정	6
1. 심사절차	6
2. 심사방법 및 내용	6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8
1. 연구비 지급	8
2. 연구비 관리	8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1.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VII. 간접연구비 지원	11
VIII. 기타사항	12
붙임 1.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14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 지원
- 우수한 연구업적을 자유롭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속에서 저술을 통해 집대성할 수 있도록 장기지원
- 우수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계승 발전

2. 지원방향

- 국제적 지명도 및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갖춘 우수학자 중점 지원
 - 한국 인문사회분야를 대표할 만한 저술활동 지원 강화
 - 한국 인문사회분야의 국제화를 선도할 우수학자 지원 강화
- 저술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의 학문이론을 선도하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영문저서 출판 장려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부여 및 정산 간소화
- 학문적 탁월성 및 연구업적 위주의 심사

II.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인문사회 전 분야

(인문사회학적 성격의 예술, 체육, 복합학분야 지원가능)

나. 지원대상

-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동일 학문 분야의 국내·외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자
 - 연구성과의 우수성이 국가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

- 저술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의 학문이론을 선도하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

다. 지원형태: 단독연구

※ 박사급 연구원 활용가능

2. 지원예산 : 600백만원(20과제 이내)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연 3,000만원

나. 지원기간: 5년(2+2+1)

- * 1-4년차에는 연구성과물 창출, 5년차에는 연구성과물 보완 및 출판
- * 3단계지원: 단계별 중간평가

Ⅲ. 신청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대학 교원 임용 후 10년이 경과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동등한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최근 7년간 700% 이상의 업적과 최근 10년간 단독 연구저서 2권 이상 저술실적을 가진 연구자로
 - 학회(재단 등재학술지 발행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 ※ 업적산정 기준일은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2006.10.11)
- ※ 사회과학의 경우 SSCI의 Publication list와 피인용지수 제출 권장
- ※ 업적 산정 기준표

○ 학술논문산정

구 분	평 가 항 목	1건당 인정편수	인 정 범 위
학술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2편	SSCI, A&HCI 등재학술지
		1.5편	SCIE 등재학술지
	국내학술지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0.8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공동저서		산정방식은 하단 참조	

-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공동 논문 또는 저서의 경우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 이상 공동연구: 25%로 인정

○ 단독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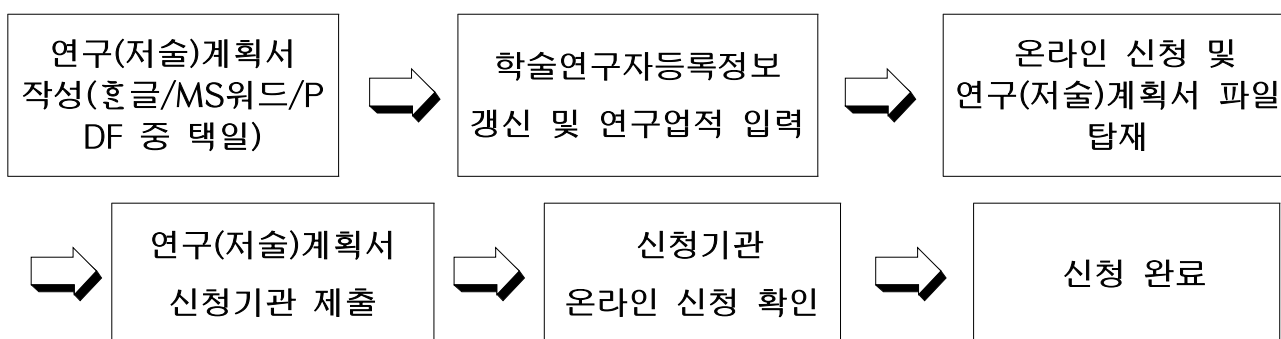
구 분	평 가 항 목	인정편수	인 정 범 위
학술 저서	전문학술저서	2편이상	전문학술저서에 한함(단,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

- 저서 : 단독저서에 한함

2. 신청기간 : 2006.09.22(금) ~ 2006.10.18(수) 18:0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제출서류 준비
 - 학회장 추천서 : [붙임1]의 추천서를 학회에서 추천 받아 탑재
 - ※ 학회의 관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 학회별로 2인 이하 추천 가능
 - 학술활동이력서 : [붙임2]의 내용을 작성하여 탑재
 - 연구논문목록 : [붙임3]의 내용을 작성하여 탑재
 - 단독저서목록 : [붙임4]의 내용을 작성하여 탑재
 - ※ 심사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논문과 단독저서 준비
 - 주요연구업적개요서 : [붙임5]의 내용을 [붙임3]과 [붙임4]의 목록과 일치하게 작성하여 탑재(연구논문수+단독저서수=주요연구업적개요서)
 - 저술계획서 : [붙임6]의 내용을 작성하여 탑재
 - ※ 영문저술의 경우는 영문 저술계획서 1부 제출
 - ※ 파일을 제출서류별로 나눠 각각 탑재
 - ※ 선정후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임용증명서, 기타 경력증명서 등 제출 예정
(서류 미제출시 선정취소)
- 3)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는 저술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저술)계획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연구비 집행에 관한 부분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지 않고 관리기관에서 집행 관리함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연구(저술)계획서 파일의 수

정·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교체가 불가능함

※ 수정·교체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되니, 수정·교체하신 후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다시 클릭해야함

- 4) 연구(저술)계획서 파일은 탑재하기 전에 『인쇄-미리보기』에서 한 면에 2쪽 이상 보이게 되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파일 탑재 이전에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5) 온라인 신청 및 연구(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연구(저술)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1부 포함)을 출력하여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시한 : 2006.10.19(목) ~ 2006.10.20(금) 18:00까지
 -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타 증빙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가. 연구비 신청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

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나. 연구 참여제한

- 본 우수학자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추천심사	-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학자를 학회별 2인 이하 추천(반드시 학회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 통과)	학회
2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재단
3단계	전문심사	- 연구업적 및 저술계획서 심사	선정위원회
4단계	종합심사	- 전문심사 결과 검토 및 최종 선정자 확정	선정위원회, 재단, 교육부

2. 심사방법 및 내용

나. 심사방법 및 내용

1) 1단계 심사 : 학회 추천심사

- 심사주관: 학회(재단 등재 학술지 발행 학회에 한함)
 - * 관련 학회 공동 추천 권장
- 심사방법: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학자를 학회별 2인 이하를 추천하
되 반드시 학회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치고 추천서에
추천 사유와 그 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함

2) 2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재단
- 심사방법: 전산시스템 및 서면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3) 3단계 심사: 전문심사

- 심사주관: 선정위원회
- 심사내용
 - 업적평가(40점): 최근 7년간 연구업적과 최근 10년간 단독 연구저서
2권의 질적 평가, 추천서 내용 평가
 - 저술계획서 평가(60점):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 등
- 전문심사 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배점
저술계획서 평가	연구 계획의 우수성	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학문적 가치 · 연구내용의 필요성	20
		연구방법	·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실행계획의 구체성	20
	학문의 파급 효과	학문발전 공 헌 도	· 연구 성과 예상 · 학문의 파급효과 · 결과 활용의 적정성 · 교육과의 연계성	20
업적평가				40
계				100

4) 4단계 심사: 종합심사

- 심사주관: 종합심사위원회(선정위원회, 재단, 교육부)
- 심사내용
 - 전문심사 결과 검토
 - 최종 선정과제 결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연구자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연차별 지급

다. 연구비 사용

연구자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연구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의 중앙관리하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정산은 관리기간의 기준에 따름
 - 자율적 집행의 의미
 - 특정 항목 예산 집중 편성 가능, 예산 편성 후 실행예산 변경 제한 완화, 해외 여비 제한 없으며, 연구활동과 관련한 해외 장기체류 가능
-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을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저술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시기

- 1차: 연구개시후 1년 10개월 이내
- 2차: 연구개시후 3년 10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온라인으로 제출

다. 제출서류: 중간보고서(재단 소정양식)

라. 평가결과: 계속지원 여부 결정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연구 종료일까지
 -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 2) 제출방법: 출판 원문파일 온라인 탑재 및 출판물 제출
-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
 - 파일탑재 및 출판물 제출
 - **출판물**(영문인 경우 선진외국의 저명(대학) 출판사 출판 권장)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5) 출판된 저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이 저서는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342-○○○○○○○)”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342-○○○○○○○).”

나.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 『기술이전촉진법』 에 의해 국공립 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의 소유로 함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재단과 협의하여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로 제한함
-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다.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Ⅶ.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자의 소속 기관

2. 지원기준

- 2005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

3. 지원비율

- A등급 기관: 지원결정 연구비의 15% 지원
- B등급 기관: 지원결정 연구비의 10% 지원
- C등급 기관: 지원결정 연구비의 5% 지원

- 기타 기관: 지원결정 연구비의 3% 지원

4.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일괄 지급

5. 사용범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 관련 문의 : 사회과학지원팀

Tel (02) 3460-5586 Fax (02) 3460-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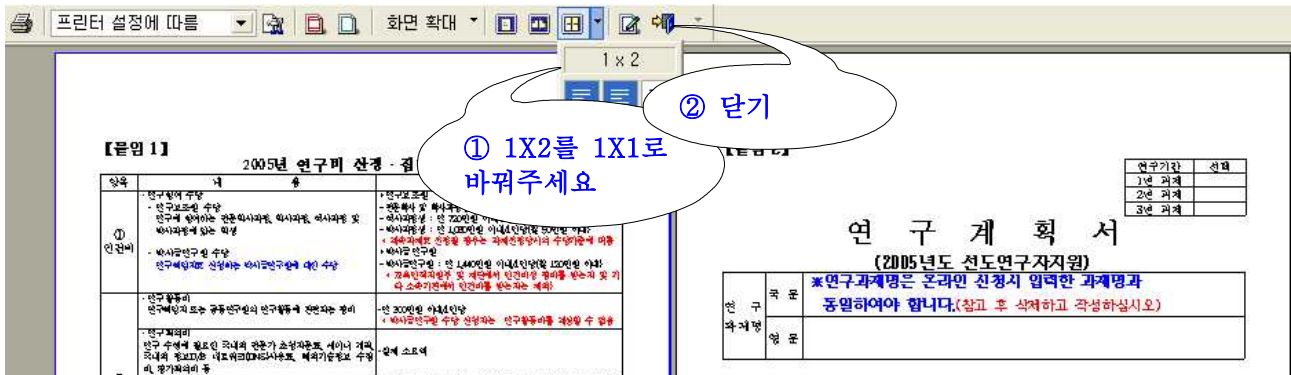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전산관련문의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1~7 Fax (02) 3460-5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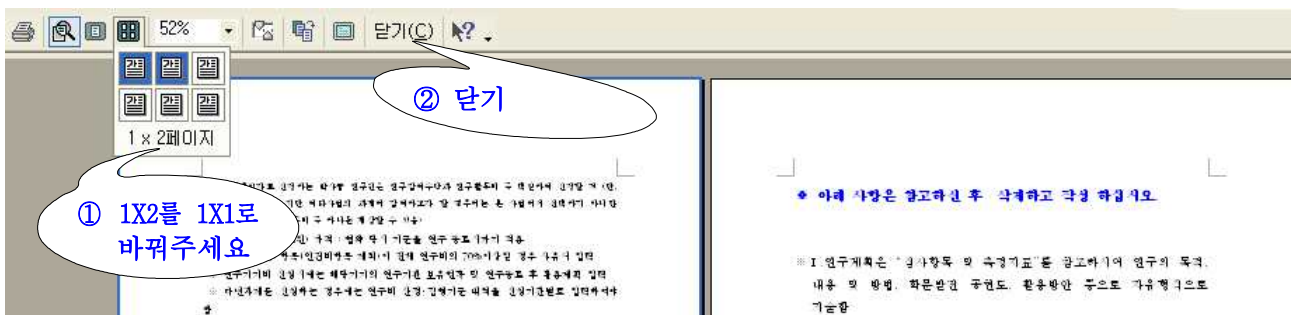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 강의·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미리보기』에서 인쇄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미리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 아래 각 그림의 ①과 ②를 차례대로 실행한 후 저장하여 주십시오. 저장 후에는 인쇄 미리보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한글]



[MS Word]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위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6년도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항목만 유지(동 사업 해당사항 없음)
	·외부인건비 -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 박사급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재단 및 타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박사급연구원 : 연 1,920만원 / 1인당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항목만 유지(동 사업 해당사항 없음)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 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최소 경비(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최종년도 출판비 산정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u>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u>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연 300만원 이내/1인당 ※ <u>연구참여 수당을 신청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u>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